



學校 松岡學園
法人

2021학년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인	2인
재적임원	8인	2인

1. 일 시 : 2021년 11월 17일(수) 11:00~12:10 (회의소집 통보일: 2021년 11월 8일)

2. 장 소 : 학교법인 송강학원 이사장실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임원

- 이사(7인) : 김광아, 이선재, 서평렬, 김희남, 오장원, 김화진, 박대홍
- 감사(0인) :

○ 결석 임원

- 이사(1인) : 이치우
- 감사(2인) : 최규철, 국승열

4. 안 건

가. 정관 변경(안) 의결

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안) 의결

다.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라.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5. 회의내용

학교법인 송강학원의 2021학년도 제7차 이사회를 2021. 11. 17. 11:00에 학교법인 송강학원 이사장실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 진행하다.

사회자는 재적이사 8명중 7명이 참석하여 정관 제28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의장은 2021학년도 제7차 이사회의 개최를 선언하다. 그리고 안건 상정에 앞서 새로 선임된 김화진 이사를 소개하다.

간 서 명	김광아	이선재	서평렬	김희남	오장원
	김화진	박대홍			

6. 안전심의

가. 의안 제1호 : 정관 변경(안) 의결

의장은 정관 변경(안)을 별첨과 같이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사회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하여 이에 따른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자 정관 변경(안)을 이사회에 상정,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제안함을 설명하다.

의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빅대홍 이사는 교원임용과 관련된 상위 법령의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사항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하다.

김희남 이사는 빅대홍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의장은 이사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의장은 정관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별첨 : 의안 제1호 정관 변경(안) 의결

나. 의안 제2호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안) 의결

의장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안)을 별첨과 같이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사회자는 학교법인 송강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산166-7외2필지의 토지가 광주광역시 및 빚고을 중앙공원개발(주)에서 시행하는 “중앙근린공원1지구 개발행위특례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손실보상 협의(계약) 요청이 있어, 이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제안함을 설명하다.

의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오장원 이사는 중앙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되어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근린공원 개발과 관련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며 이에 따른 토지수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한다면서 대체취득에 따른 재산의 수익성 확보 방안을 당부하다.

서평렬 이사는 오장원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의장은 이사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의장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별첨 : 의안 제2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안) 의결

간 서 명	김광아	이선재	서평렬	김희남	오장원
	김광아	이선재	서평렬	김희남	오장원
	김희진	박대홍			
	김희진	박대홍			

다. 의안 제3호 :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의장은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별첨과 같이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사회자는 2021회계연도 법인일반업무회계의 본 예산액은 3,894,160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은 615,466천원이 증액된 4,509,626천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다면서 관항목별로 예산편성 사유와 산출내역을 설명하다. 그리고 수익사업회계의 본 예산액은 1,382,040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은 19,999천원이 감액된 1,362,041천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다면서 관항목별로 예산편성 사유와 산출내역을 설명하다.

의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서평렬 이사는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증액이 예산편성의 주된 이유인 것 같으며 코로나19의 상황이 하루 빨리 종식되어 수익사업체인 체육관의 대관행사가 많이 이루어져 법인전출금 등 법인의 책무성 강화에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하다.

김화진 이사는 서평렬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의장은 이사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의장은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별첨 : 의안 제3호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라. 의안 제4호 :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의장은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별첨과 같이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사회자는 설치·경영학교인 광주여자대학교의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의 본 예산액은 25,126,648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은 601,571천원이 증액된 25,728,219천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다면서 관항목별로 예산편성 사유와 산출내역을 설명하다. 그리고 비등록금회계의 본 예산액은 19,691,488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은 851,796천원이 증액된 20,543,284천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다면서 관항목별로 예산편성 사유와 산출내역을 또한 설명하다.

의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간 서 명	김광아	이선재	서평렬	김희남	오장원
	김광아	이선재	서평렬	김희남	오장원
	김화진	박대홍			
	김화진	박대홍			

김희남 이사는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나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하다.

오장원 이사는 김희남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의장은 이사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의장은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별첨 : 의안 제4호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7. 폐회 선언

의장은 2021. 11. 17. 12:10분에 2021학년도 제7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21. 11. 17.

간 서 명	김광아	이선재	서평원	김희남	오장원
	김광아	이선재	서평원	김희남	오장원

학교법인 송강학원 이사장

김 광 아

김광아

이 사

이 선

이선재

이 사

서 평 렬

서평렬

이 사

김 희 남

김희남

이 사

오 장 원

오장원

이 사

김 화 진

김화진

이 사

박 대 홍

박대홍



學校人 松岡學園

2021학년도 제7차 이사회 안건

1. 일 시 : 2021년 11월 17일(수) 11시 00분

2. 장 소 : 학교법인 송강학원 이사장실

3. 안 건

제 1호 : 정관 변경(안) 의결

제 2호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안) 의결

제 3호 :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제 4호 :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간 서 명	김광아	이선재	서평렬	김희남	오장원
	김광아	이선재	서평렬	김희남	오장원
	김화진	박대홍	이치우	최규철	국승열
	김화진	박대홍	이치우	최규철	국승열

「의안 제1호」

정관 변경(안) 의결

□ 의결주문

학교법인 송강학원의 정관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 제안사유

학교법인 송강학원에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하여 이에 따른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자 정관 변경(안)을 이사회에 상정,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제안하는 것임.

□ 주요골자

1. 정관 변경(안) 주요 내용

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교수의 근무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2.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9조(임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대학교 교원의 임면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하되,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규정된 자의 임면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대학교 교원의 임면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하되,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규정된 자의 임면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간 서 명	김광아	이선재	서병렬	김희남	오장원
	김화진	박대홍	이치우	최규철	국승열

현행	개정안
1. 근무기간 가. 교 수 : <u>8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한 기간 또는 정년까지</u> 나. 부교수 : 6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3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강사 :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2. 급여 : 정관 제45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 교육·연구·봉사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재계약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6.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대학교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임면하고 이를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대학원장 및 처 부서장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며, 기타 교원의 보직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이 보하고 이를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근무기간 가. 교 수 : <u>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u>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간 서 명	김광아	이선재	서평렬	김희남	오장원
	김화진	박대홍	이치우	최규철	국승열

현행	개정안
⑤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강사의 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간서명	김광아	이선재	서광원	김희남	오장원
	김화진	박대홍	이치우	최규철	국승열

「의안 제2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안) 의결

□ 의결주문

학교법인 송강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 제안사유

학교법인 송강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산166-7외2필지의 토지가 광주광역시 및 빚고을 중앙공원개발(주)에서 시행하는 “중앙근린공원1지구 개발행위특례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손실보상 협의(계약) 요청이 있어, 이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제안하는 것임.

□ 주요골자

1. 처분할 재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감정평가액/ 손실보상액(원)	비고
토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산166-7	목	3,868	893,508,000	
토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558	답	2,172	677,664,000	
토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560-8	전	462	306,075,000	
합 계				6,502	1,877,247,000	

2. 처분예정금액 : 금1,877,247,000원

3. 처분금의 용도 :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신탁예금(정기예금) 예치】

간 서 명	김광아	이선재	서평원	김희남	오장원
	김화진	박대홍	이치우	최규철	국승열

『의안 제3호』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의결주문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 제안사유

학교법인 송강학원의 법인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대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상정,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 주요골자

1.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가. 법인일반업무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A)	본 예산액(B)	증 감(A-B)	비 고
세 입	4,509,626	3,894,160	615,466	
세 출	4,509,626	3,894,160	615,466	

나. 수익사업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A)	본 예산액(B)	증 감(A-B)	비 고
세 입	1,362,041	1,382,040	△19,999	
세 출	1,362,041	1,382,040	△19,999	

□ 붙임

1.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간 서 명	김광아	이선재	서광원	김희남	오장원
	김화진	박대홍	이치우	최규철	국승열

『의안 제4호』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의결주문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 제안사유

학교법인 송강학원 설치·경영학교인 광주여자대학교의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편성하여 이사회에 상정,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 주요골자

1.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A)	본 예산액(B)	증 감(A-B)	비 고
등록금회계(a)	25,728,219	25,126,648	601,571	
비등록금회계(b)	20,543,284	19,691,488	851,796	
내부거래제거(c)	2	2	0	
합계(a+b-c)	46,271,501	44,818,134	1,453,367	

□ 붙임

1.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간 서 명	김광아	이선재	서평립	김희남	오장원
	김화진	박대홍	이치우	최규철	국승열